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8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우 현

#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A Research Study on Injury Experience of  
Special School Teachers

2011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우 현

#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지도교수 김 정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우 현

## 김우현의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2011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ABSTRACT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II. 이론적 배경 .....	5
1. 학교안전사고 .....	5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	5
2)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	6
2. 특수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의 중요성 .....	9
3.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 .....	10
III. 연구 방법 .....	14
1. 연구대상 .....	14
2. 연구도구 .....	15
3. 연구절차 .....	16
4. 자료처리 .....	16
IV. 연구 결과 .....	17
1.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결과 .....	17
1) 특수교사가 입은 학교안전사고 실태 .....	17
2)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	18
3) 특수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유형 .....	19
4)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한 상해유형 .....	20
5)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부위 .....	25
6)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유형 .....	28

7)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	33
8) 교사의 상해 치료 상태 .....	34
2.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결과 .....	36
3.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예방 결과 .....	41
 V. 논의 .....	 48
 VI. 결론 및 제언 .....	 52
1. 결론 .....	52
2. 제언 .....	53
 참고문헌 .....	 55
부    록 .....	56

## 표 목 차

<표Ⅱ-1> 주요 학교안전사고 사례 .....	5
<표Ⅱ-2> 학교안전공제회에 처리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건수와 사고현황 .....	6
<표Ⅱ-3> 선행 연구 비교 .....	10
<표Ⅲ-1> 연구대상자의 기초자료 .....	14
<표Ⅲ-2> 설문지 구성 .....	15
<표Ⅳ-1> 특수교사가 경험한 상해 횟수 .....	17
<표Ⅳ-2>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	18
<표Ⅳ-3> 특수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유형 .....	19
<표Ⅳ-4>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정보 유무 .....	20
<표Ⅳ-5> 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 유무 .....	21
<표Ⅳ-6> 안전사고의 대처방법 .....	22
<표Ⅳ-7> 안전사고 예방지식의 습득방법 .....	23
<표Ⅳ-8> 공격행동에 대한 이유 .....	23
<표Ⅳ-9> 교사상해에 대한 방안모색과 정보공유 .....	24
<표Ⅳ-10>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	25
<표Ⅳ-11>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부위 .....	26
<표Ⅳ-12>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	28
<표Ⅳ-13> 성별에 따른 상해유형 .....	29
<표Ⅳ-14> 장애영역에 따른 상해유형 .....	30
<표Ⅳ-15> 담당 학교급에 따른 상해유형 .....	31
<표Ⅳ-16> 교육경력에 따른 상해유형 .....	32
<표Ⅳ-17>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	33
<표Ⅳ-18> 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해의 치료기간 .....	33
<표Ⅳ-19> 상해를 입은 후 교사의 치료 상태 .....	34
<표Ⅳ-20> 장애영역에 따른 상해의 치료상태 .....	35
<표Ⅳ-21>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도규정의 유무 .....	36
<표Ⅳ-22> 장애영역에 따른 학생의 선도규정 .....	37

<표IV-23>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	38
<표IV-24>교사의 성별에 따른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	38
<표IV-25>장애영역에 따른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	39
<표IV-26>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방법 .....	40
<표IV-27>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 .....	41
<표IV-28>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	42
<표IV-29>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	43
<표IV-30>담당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	44
<표IV-31>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 .....	45
<표IV-32>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시점 .....	45
<표IV-33>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내용 .....	46

# ABSTRACT

## A Research Study on Injury Experience of Special School Teachers

by Kim W00-Hyun

Advisor : Prof. Jeong-youn Kim,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urvey teachers awareness of accident prevention, an approach to cope with the accident, the real state of an injury teachers have experienced themselves in these five years (2006~2010) targeting at 246 teachers working in public special schools (for a total of six) in Busan. As a result, first, Of 246 teachers, 126 of whom (44.8%) experienced safety accident in their schools, especially, 109 teachers (45.6%) responded that the aggressive act of students results in injuries. 97 teachers injured knew information about aggressive act in advance, and 88 teachers (80.7%) responded that it happened accidentally without presymptom. 42 teachers dealt with the injuries with prevention knowledge for safety accident. 67 teachers couldn't deal with them properly due to lack in their gumption on a real situation despite their having knowledge to prevent, or they resulted from lacking in their prevention knowledge. What's the paramount is the ways of learning prevention knowledge. Of numerous ways. "Prevention knowledge from the previous similar experiences accounts for 53 teachers (48.1%), " advice and imitation of disciplines quoted from experienced teachers makes up 37 (34.3%). In light of the survey, it shows most of them are learned by hands-on experiences in school.

Second, in case safety accident in special school happens owing to aggression or problem behavior of students, leading regulations for students indicate "I

have no idea" or "no problem", and in case of mental retardation, "consultatio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measures to be applied for students. "apologizes of parents and students" are seemed to be alike statistically. In case the teachers get injured in the school, they can be compensated by mean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ct」, 「Korea Teachers' Pension Act」 when the case is considered or determined as an official accident. But It is suggested that most of the teachers injured get treatment for themselves with individual policy or their own money.

Third, special school teachers hope a reduction in class numbers the most in order to prevent injuries. Their recognition of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related with injuries is very high, but it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education is low relatively compared to the recognition. Each city and province takes charge of safety training, and conducts it such as a sex education more than once in a year. Depending on the defense to student's aggression, a positive arbitration mechanism, and types of disability and level, physically helpful trick(manual), positive aid, and arbitration to students' problem behavior are on the program in order of importance.

Abou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re should be a limit to access the safety accident in educational arena with teachers' views, and a consultative group to diagnose problems with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and establish countermeasures should be formed so that a lively discussion of safety accident for special school teachers can take place. This study also has constrains in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was studied only in special school of the Busan district and methodological problem to use questionnaires. So objects of the study should be expanded all over the nation, and study for more detail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needs to be don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어떠한 사고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학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돌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사에게 있어 일상 중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활동하는 생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학교라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중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 ‘교육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瑕疵) 또는 학생이나 교원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교내외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 및 교원의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고’, ‘학생이 학습활동을 영위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 (이상근, 2006)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0)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추이를 살펴 보면,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건수는 2005년 33,834건, 2006년 37,992건, 2007년 41,114건, 2008년 48,551건, 2009년 53,23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는 학계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즉 2009년도 서울시 학교안전사고 현황(송효근, 2010)을 살펴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 48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58,409천원의 공제급여가 지급되어 발생 건당 평균지급금액이 1,216,854원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유치원 84,607원, 초등학교 226,156원, 중학교 357,079원, 고등학교 704,272원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일 경우 보다 심각한 부상의 정

도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자료상의 수치는 보상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접수된 것에 한정하여 산출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또는 교사의 안전사고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에 관한 연구(김소연, 2007), 정서장애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부기, 200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비교(최성규, 2005)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 중 김소연(2007)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지체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해 잘 알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장애학생 스스로가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문제행동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둘째, 장애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사고 과정에서 그 책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충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과다한 학생을 소수 교사가 관리하는 현실에서 장애학생의 예측 불가능 공격행동이나 돌발적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는 사전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문제로 사고당사자, 학교, 학부모간에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셋째,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상대적으로 교원이 당한 사고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많은 특수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의 현장 경험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나 공격성 행동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 표출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교사의 비중이 많은 추세에서 정신지체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적·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 특징은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인지적·신체적으로 점차 중도·중복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정신지체학교에만 국한된 일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은 특수교사의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교원이 당한 사고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은 학

교안전사고가 특수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에 부정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수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과 일차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다. 그러한 특수교육에 있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강한 신념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안전과 보호의 측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겪은 상해의 실태와 사고처리 그리고 상해를 입은 교사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은 특수학교 현장 실태를 알고 이에 기초한 예방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들이 겪은 상해의 실태와 사고처리 방법을 조사하면서 특수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적합한 교사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본인이 겪은 상해의 실태, 사고처리 방법, 사고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는 어떠한가?

1-1) 특수학교에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는 교사의 변인(성별, 교육경력, 장애영역, 학교급)에 따라 어떠한가?

2) 교사의 상해 발생 이후 사고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3)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을 수 있는 상해의 예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 3. 17 개정).

#### 2) 교사가 겪은 상해(傷害)

최근 5년(2005~2010년)동안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특수학교(출장지 포함)에 출근해서 퇴근(방학 중 프로그램 포함)할 때까지 교사가 직접 경험한 상해로써 병원치료를 요했거나, 요하지 않는 모든 상해를 말하며 질병이나 유전으로 인한 상해는 제외시켰다.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경험 할 수 있는 상해를 본 논문에서는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상해, 동료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직원체육 및 교총배구대회 등 체육활동에 참여로 인한 상해, 시설미비 및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상해, 불가항력적인 학교재해, 항의하러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와의 다툼 등 학부모와 관련 된 상해, 그리고 기타 상해로 제시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안전사고

####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학교는 성장기의 미성년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는 공간이며, 실험·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학습의 장인 관계로 각종 사고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을 사고에 의한 사례, 질병에 의한 사례, 기타 특이 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II-1>와 같다.

<표II-1> 주요 학교안전사고 사례

구분	I.사고에 의한 사례	II.질병에 의한 사례	III.기타 특이 사례
사 례 내 용	1. 등·하교 시간 2. 교육활동 일반사고 가. 수업활동시간 나. 특별활동시간 다. 과외활동시간 라. 수련활동시간 마. 교내·외 체육대회 시간 3. 휴식시간 4. 학교체류시간	1. 일사병 2. 이물질과 접촉에 의한 피부염 3.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예1) 미니등반대회에 참가 중 뇌출혈 예2) 지적장애 학생이 열차에 치어 사망 예3) 스케이팅장 현장학습 후 질병발생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법령자료실(2010. 7. 1 발간)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 유형에서 사고에 의한 사례는 등·하교 시간 교육활동 일반사고, 휴식시간, 학교체류시간의 사례를 말한다. 그 중 교육활동 일반사고는 수업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과외활동시간, 수련활동시간, 교내·외 체육대회시간으로 상세히 사례를 들고 있으며, 질병에 의한 사례는 일사병, 이물질과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기타 특이 사례는 사고와 질병에 의한 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예시로 미니등반대회에 참가 중 뇌출혈, 지적장애 학생이 열차에 치어 사망, 스케이트장 현장학습 후 질병발생을 들고 있다.

## 2)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특수학교 교사에게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교사가 입은 학교안전사고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고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연구자가 민원전화를 하여 수집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현황을 제시하면 <표Ⅱ-2>와 같다.

<표Ⅱ-2> 학교안전공제회에 처리한 학교안전사고의 발생건수와 사고현황

시 도	연도 별	종별	계	체육 시간	실험 실습	교과 수업	청소 시간	휴식 시간	과외 활동	기타
총 괄	2006	유치원	2,629	138	15	824	5	1,212	205	230
		초등학교	14,216	3,822	130	849	498	6,975	1,046	898
		중학교	11,545	5,042	55	302	479	4,143	1,019	505
		고등학교	9,346	4,275	132	525	358	2,789	1,081	459
		특수학교	158	19	5	41	2	63	17	11
		기타학교	33	15	1	0	2	12	2	1
		평생교육시설	65	22	1	3	5	23	6	5
		계	37,992	13,333	339	2,544	1,349	15,217	3,376	2,109

2007	유치원	2,676	132	7	981	13	1,031	226	286
	초등학교	15,470	4,013	129	950	503	7,793	895	1,187
	중학교	12,647	5,203	69	430	462	4,832	1,007	646
	고등학교	10,007	4,472	128	336	380	2,981	1,079	634
	특수학교	206	21	7	37	2	86	28	27
	기타학교	32	10	2	0	1	12	5	2
	평생교육시설	74	36	5	1	4	20	5	3
	계	41,112	13,887	347	2,735	1,365	16,755	3,245	2,785
2008	유치원	2,743	133	6	988	10	971	225	410
	초등학교	18,227	4,447	200	1,187	506	8,737	1,292	1,858
	중학교	14,708	5,932	95	566	496	5,496	1,163	960
	고등학교	12,548	5,106	176	464	466	4,089	1,350	897
	특수학교	212	20	2	67	3	62	25	33
	기타학교	24	6	3	4	0	8	2	1
	평생교육시설	84	40	2	0	2	25	6	9
	외국인학교	5	0	0	1	0	2	1	1
계	18,551	15,684	484	3,277	1,483	19,390	4,664	4,169	
2009	유치원	3,280	172	12	1,127	2	1,105	304	558
	초등학교	18,768	5,179	256	1,075	462	8,636	1,298	1,862
	중학교	16,455	6,829	93	462	553	6,369	1,233	916
	고등학교	14,362	5,966	184	350	531	4,820	1,474	1,037
	특수학교	211	37	6	40	0	70	24	34
	기타학교	30	9	2	3	1	8	4	3
	평생교육시설	117	54	2	4	4	29	14	10
	외국인학교	8	5	0	0	0	1	0	2
계	53,231	18,251	555	3,061	1,553	21,038	4,351	4,422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제공(팩스원본은 부록에 제시)

<표Ⅱ-2>는 학교안전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처리한 사고의 발생건수와 사고현황을 학교별로 분석한 자료로써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4년 동안 30%가량 늘었다. 모든 교육과정의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고발생 수가 실제로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시안도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 담당교사나 학부모의 양해로 교내에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이 학교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발생건수 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수교육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야기 될 수 있다.

둘째, 특수학교 학교안전사고는 교과시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을 상황시간대별로 볼 때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사고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수학교에서도 휴식시간에 사고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비임장 중 이거나 상대적으로 교사의 감독이 소홀하기 쉬운 휴식시간에 크고 작은 학교안전사고가 유발됨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대적으로 교과수업시간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도 특수학교에서는 교과수업이 41건(26%), 휴식시간이 63건(40%)이었고 2007년도에는 교과수업이 37건(18%), 휴식시간이 86건(42%)이었지만 2008년도에는 교과수업이 67건(32%)으로 휴식시간 62건(29%)보다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임장중인 수업시간에도 학생들의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이 일반학교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수교사로 하여금 끊임 없는 주의와 보호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및 특수교사의 상해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구자가 조사하거나 민원상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인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재해보상자료만 있을 뿐 학교안전사고나 교사의 상해현황 자료는 없었다. 학교안전사고를 담당하는 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세 기관을 통해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를 찾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특수교사의 경험을 통해 상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세 기관의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청구절

차에 의해 접수 후 심사·결정해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한다.

둘째,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라고 심사·결정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 특수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의 중요성

특수학교대상 학생들이 인지적·신체적으로 점차 중도·중복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강병일, 김남진(2010)의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특수학교 교사 106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5%에 해당하는 45명이었다. 남자교사(43.3%)가 여자교사(41.3%)에 비해 신체적 상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직 경력에 있어서도 큰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특수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학교와 청각장애학교 그리고 지체장애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의 경우가 정신지체학교와 시각장애학교 교사들에 비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적이 많다는 반응의 빈도가 높게 조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사의 신체적 상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타박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29.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찰과상(19.1%), 피부손상과 염좌(16.9%), 근육손상(10.1%)의 순이었다.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발생했던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60.0%)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35.6%), 학교의 시설·설비에 의한 사고(4.4%)가 그 뒤를 이었다. 유·초등부 교사들의 경우는 학생의 공격성 행동(53.8%), 그리고 본인의 실수(46.2%)에 의한 사고의 순이었으며, 중학부 교사들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87.5%)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고등부 교사들은 본인의 실수(56.3%)로 인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고 학생의 공격성 행동

(37.5%)이 다음이었다. 이와 같이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담당 학년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alpha=.033$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용 지출 방법을 파악한 결과, 본인의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는 반응이 8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7.4%), 가해학생 부모에 의한 비용 처리(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 처리와 학교 측에서 비용처리가 문항의 보기로 제시되었으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상해 치료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강병일, 김남진, 2010).

교사 측면에서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들의 신체적 상해 유형,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을 살펴보았다. 특수학교의 안전사고는 상대적으로 교원이 당한 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나 공격성 행동이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점 여교사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교사들은 정신적·치료비용적 피해를 겪고 있었다(김소연, 2007).

### 3.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선행연구

#### 1)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관련성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3> 선행 연구 비교

연구자	발행 연도	자료 유형	연구대상	주제	연구 방법
김소연	2007	국내 석사	전국에 소재한 정신지체학교 75개교를 층화군집표집한 10개교의 정신지체 재직교사 273명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조사 연구

임병훈	2007	국내 석사	서울, 경기, 인천 정신지체 재직교사 399명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도에 관한 진단적 연구	조사 연구
최미리 박정훈	2007	학술 저널	인천지역 학급담임110명 임의표집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황순영	2006	국내 박사	P도시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교의 초·중등 신규 특수교사 발령받은 20명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질적 연구
홍정순	2006	국내 석사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사200명, 학부모 300명을 무선표집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조사 연구
강영심 황순영	2005	학술 저널	B도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중 무선 표집한 250명	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조사 연구
최성규	2005	학술 저널	전국규모의 특수교육 연수에 참여한 교사 261명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	조사 연구

위의 선행연구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소연(2007)은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에서 85%의 교사가 학생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교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이 학생의 문제행동이라고 인식하였으며 73%의 교사는 교사 자신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안전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자력구제 방법을 사용한 교사는 75%였으며 학생생활 규정이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사용한 교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사는 95%였으나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사는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증재에 대해 55%의 교사가 그 효과성을 확신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의 안전교육에 대해 임병훈(2007)은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도에 관한 진단적 연구’에서 PRECED모형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실태를 특수교사의 일반적 특징에 따라 안전교육실천도를 진단하였다.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담

임유무 등을 고려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배치하고 교사는 안전사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을 갖기 위하여 수시로 교사연수경험을 가지며 학부모, 지역사회 기관, 지역 지민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특수학교 안전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이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최미리, 박정훈(2007)은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쉬는 시간과 교과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발생 장소는 교실과 운동장에서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은 학생의 부주위와 학생간의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며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바꾸거나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들의 안전사고 개선방향으로는 면책특권 민사적 책임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초임교사가 경력교사보다 상대적으로 학교안전사고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살펴본 황순영(2006)의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초임 특수교사들은 크게 근무환경, 개인적 특성, 교직 문화적 특성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직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이들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을 토대로 개척정신을 가진 탐험형, 성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순응형, 카오스 상태의 혼란형으로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해 이론적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실제 교사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 하였지만 절대적 지식이라고 믿었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에 대한 예견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였다. 이들이 새로운 교직환경에 좀 더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 시절부터 교직양성 프로그램 내에 교직실습, 인턴십, 반성적 사고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황정순(2006)의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학교안전사고의 원인과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했느냐에 관한 사항과 처벌이 원인이 된 경우 교사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수준은 교사와 학부모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안전사고와 특수교사의 효능감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영심, 황순영(2006)의 ‘특수교사의 교사 효능감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에서는 교사 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일반적 교수효능감보다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하위 영향요인인 외적요인(보수, 승진, 직무자세, 담당학생의 장애정도)과 내적요인(교사경력)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외적요인(부모와의 관계, 직무자세, 학교장과의 관계)과 내적요인(연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은 특수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특수성을 잘 통제하고 지원해 줄 경우 특수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수학교의 안전사고는 장애학생들의 특성상 일반학교와 차이를 보이며 최성규(2005)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에서 교사변인별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내용은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연령이 어린 아동을 지도하는 초등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심리와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고조되어 있었으며 이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면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많은 조사연구와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학교안전사고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학교안전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안전사고의 지속적인 현장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특수학교 교사들이 겪은 상해 현황과 사고처리 및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특수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특수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5년(2006~2010)간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입은 상해를 연구하기 위하여 부산에 공립 특수학교 총 6개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246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82.6%로 나타났다.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거나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239명의 설문응답자를 최종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해준 연구대상자의 기초자료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대상자의 기초자료

(N=239)

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자	61	22.5
	여자	178	74.5
	합계	239	100.0
근무학교의 장애영역	정신지체	130	54.4
	지체장애	54	22.6
	시각장애	27	11.3
	청각장애	28	11.7
	합계	239	100.0
담당하는 특수학교급	초등학교	87	36.4
	중·고등학교	152	62.8
	합계	239	100.0
2010년11월 현재 특수교육경력	1~2년	51	21.3
	3~5년	70	29.3
	6~10년	63	26.4
	10년 이상	55	23.0
	합계	239	100.0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최근 5년간(2006~2010)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입은 상해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이다(부록1 참조). 이 설문지는 학교안전사고와 상해 관련 선행연구 되었던 김소연(2007), 최미리(2007), 홍정순(2006), 이성희(2005) 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분석한 후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1차 완성하였다. 특수교육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높였으며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후 주제와의 관련성, 문항중복, 문장 등의 수정을 통해 다시 특수교육 전문가와의 토의를 거쳐 재수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27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설문지 구성

영역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기초자료	성별, 근무학교의 장애영역, 담당하는 학교급, 특수교육 경력		4
교사상해의 실태	학교안전사고 경험횟수 및 유형	1, 2	2
	신체적 도움 중 상해	2-①	1
	학생 문제행동에 의한 상해	2-② (1)~(7)	7
	상해부위 및 상해유형	3, 4	2
	치료기간 및 회복상태	5, 6	2
교사상해의 처리	선도규정 유무 및 적용	7, 8, 9	3
교사상해의 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요인	10, 11, 12, 13, 14, 15	6
계			27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부산의 공립 특수학교 총 6개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2010년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마다 본 연구자와의 오랜 친분이 있으면서 설문지를 배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교사를 선정하였고 직접 만나서 구체적인 논문 설명과 협조를 부탁드렸다. 논문주제가 최근 5년간(2006~2010) 입은 상해이므로 과거경험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설문지 배부방법을 월요일 교직원 회의시간과 같은 단체모임시간에 배부하지 말고 부서별로 수~목요일 아침에 배부해서 오후에 회수하는 방법을 취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회수된 설문지는 직접 찾아가서 전달 받았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된 설문지는 부호화를 통해 입력한 뒤 SPSS 프로그램(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설문지를 작성한 특수교사에 대한 기초사항과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 사고처리 방법, 사고 예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중 상해를 경험한 교사의 상해부위, 상해유형은 복수응답을 요구한 문항으로 복수응답빈도분석을 하여 빈도와 반응백분율 및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순위를 요구하는 문항(상해를 입은 이유, 신체적 도움을 줄 때 상해를 입었다면 그 때의 상황, 교사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 3가지, 안전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별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통해 순위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초자료와 각 문항간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 결과

이 연구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특수교사의 상해유무, 상해원인, 상해부위, 상해유형, 치료기간, 회복상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특수교사들의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성별, 근무학교의 장애영역, 담당하는 학교급, 교육경력과 특수학교 교사상해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특수교사가 입은 학교안전사고 실태

##### (1) 교사상해의 경험 횟수

최근 5년간(2006~2010) 특수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사가 경험한 학교안전사고의 유·무와 횟수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1>과 같다.

<표 IV-1>특수교사가 경험한 상해 횟수

상해경험	빈도	비율
없다	113	47.2
1~5회	107	44.8
5~10회	15	6.3
10회이상	4	1.7
합계	239	100.0%

<표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6명(52.7%)의 교사가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07명(44.8%)은 상해경험 횟수가 1~5회, 15명(6.3%)은 5~10회이며, 상해경험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도 4명(1.7%)이나 되었다. 반면에 상해경험이 없는 교사는 113명(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다양한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을 우선순위 별로 4가지를 찾아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IV-2>과 같다.

<표IV-2>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

원인분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35	27.8	52	52.0	6	12.5	1	5.0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상해	79	62.7	27	27.0	1	2.1	2	10.0
동료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4	8.3	3	15.0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3	1.3	3	3.0	16	33.3	4	20.0
직원체육 및 교총배구대회 등 체육활동 참여로 인한 상해	7	5.6	13	13.0	18	37.5	3	15.0
시설미비 및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상해	2	1.6	4	4.0	1	2.1	6	30.0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상해								
불가항력적인 학교재해					1	2.1		
항의하러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와의 다툼								
기타			1	1.0	1	2.1	1	5.0
합계	126	100	100	100	48	100	20	100

<표Ⅳ-2>는 특수교사가 상해를 입는 학교안전사고 원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제1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79명(62.7%)이 응답한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상해”이었다. 제2원인으로 52명(52.0%)이 응답한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였으며 제3원인은 35명(27.8%)이 응답하고 제2원인과 동일한 원인인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이었다. 제4원인 또한 제1원인과 동일한 원인이며 27명(27.0%)이 응답하였다. 이처럼 연구대상이 응답한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순위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상해”와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직원체육 및 교총배구대회 등 체육활동 참여로 인한 상해”도 제1~4원인을 제외한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는 다른 원인문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3) 특수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유형

특수교사가 실제 경험한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유형을 모두 응답한 결과는 <표Ⅳ-3>과 같다.

<표Ⅳ-3>특수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유형

원인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교과지도를 위한 신체적 도움	18	19.1	16	21.9	11	28.2	7	46.7
생활지도 및 신변처리를 위한 신체적 도움	35	37.2	25	34.2	6	15.4		
휠체어에 앉히는 등 학생을 움직이거나 이동에 대한 도움	24	25.5	19	26.0	9	23.1	2	13.3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학생의 비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한 상해	17	18.1	13	17.08	12	30.8	6	40.0
기타					1	2.6		
합계	94	100.	73	100	39	100	15	100

<표IV-3>는 특수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원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신체적 도움 중 학교안전사고의 제1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5명(37.2%)이 응답한 “생활지도 및 신변처리를 위한 신체적 도움”이었다. 제2원인은 25명(34.2%)이 응답하고 제1원인과 동일한 원인인 “생활지도 및 신변처리를 위한 신체적 도움”이었다. 제3원인으로는 24명(25.5%)이 응답한 “휠체어에 앉히는 등 학생을 움직이거나 이동에 대한 도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한 상해 유형

특수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이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교사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상해를 입기 전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 유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 유·무를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IV-4>와 같다.

<표IV-4>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정보 유무

n=109

정보유/무	빈도	유효%
예	97	89.0%
아니오	12	11.0%
합계	109	100.0%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109명의 특수교사 중 97명(89.0%)이 사전에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사전에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교사는 12명(11.0%)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특수교사로 하여금 높은 불안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2)상해를 입기 전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 유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 유·무를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IV-5>와 같다.

**<표IV-5>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 유무 n=109**

전조증상	빈도	유효%
전조증상이 있었음	21	19.3%
돌발적으로 일어남	88	80.7%
합계	109	100.0%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109명의 특수교사 중 21명(19.3%)만이 사전에 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돌발적으로 공격행동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교사는 88명(80.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교사가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과 감정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안전사고의 대처방법**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6>와 같다.

<표 IV-6> 안전사고의 대처방법

n=109

대처방법	빈도	유효%
안전사고 예방지식으로 대처	42	38.5%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은 결여	55	50.5%
예방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	11	10.1%
기타	1	0.9%
합계	109	100.0%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109명의 특수교사 중 안전사고 예방지식이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97명(89.0%)이었다.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지식으로 대처한 교사는 42명(38.5%)이며,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55명(50.5%)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예방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11명(10.1%)이며 기타는 1명(0.9%)이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지식이 있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 대처능력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공격행동에 대한 전조증상 유·무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응답한 교사가 88명(80.7%)인 점은 교사로 하여금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결여시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안전사고 예방지식의 습득방법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한 예방지식의 습득방법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7>와 같다.

**<표Ⅳ-7> 안전사고 예방지식의 습득방법****n=109**

예방지식 습득방법	빈도	유효%
전에 자신이 겪은 유사한 경험을 통한 예방지식	53	48.1%
경력교사들이 사용하는 훈육의 모방과 조언	37	34.3%
연수를 통한 예방지식	3	2.8%
본인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예방지식	10	9.3%
학부 때 전공지식	6	5.6%
합계	109	100.0%

<표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지식의 습득방법은 “전에 자신이 겪은 유사한 경험을 통한 예방지식”인 교사가 53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력교사들이 사용하는 훈육의 모방과 조언”으로 습득한 교사가 37명(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90명(82.4%)의 교사가 자신이 학교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 예방지식의 습득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예방지식”인 교사가 10명(9.3%), “연수를 통한 예방지식”인 교사 3명(2.8%), “학부 때 전공지식”인 교사가 6명(5.6%)인 것을 나타났다.

### (5) 공격행동에 대한 이유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이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Ⅳ-8>와 같다.

**<표Ⅳ-8> 공격행동에 대한 이유****n=109**

공격행동 이유	빈도	유효%
이유가 밝혀짐	64	58.7%
이유 없음	45	41.3%
합계	109	100.0%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사고 이후 학생이 공격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밝혀졌다고 응답한 교사는 64명(58.7%)이었으며, 이유가 없었다는 교사는 45명(41.3%)이었다.

### (6)교사상해에 대한 방안모색과 정보공유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 109명(45.6%)을 대상으로 해당학생의 공격행동과 관련하여 교사상해에 대한 방안모색과 정보공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IV-9>와 같다.

<표IV-9>교사상해에 대한 방안모색과 정보공유

n=109

방안모색과 정보공유	빈도	유효%
공유함	103	94.5%
명예실추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밝히지 않음	6	5.5%
합계	109	100.0%

<표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교사가 안전사고 이후 이에 대한 방안모색과 정보를 공유한 교사는 103명(94.5%)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명예실추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밝히지 않은 교사 6명(5.5%)에 불과하였다.

### (7)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IV-10>와 같다.

<표IV-10>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n=109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빈도	유효%
상해원인이 학생의 ‘장애’ 라는 특수한 이유이므로 학부모께 알리지 않음	19	17.4%
학교, 교사,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께 알리지 않음	6	5.5%
학부모께 알렸으며 학생이 당한 사고에는 민감하지만 자녀에 의해 교사가 입은 상해는 무관심함	43	39.4%
학부모께 알렸으며 사과와 가정에서의 생활지도를 말씀하심	36	33.1%
학부모께 알렸으며 정신적·신체적 보상을 하셨음	0	0.0%
기타	5	4.6
합계	109	100.0%

<표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입은 교사가 학생의 공격행동을 학부모께 알렸다고 응답한 교사는 79명(72.5%)이며 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서 “학생이 당한 사고에는 민감하지만 자녀에 의해 교사가 입은 상해는 무관심 하셨음”이라고 응답한 교사 43명(3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와 가정에서의 생활지도를 말씀하심”으로 응답한 교사가 36명(33.1%)이었다.

반면 상해를 입은 교사가 학생의 공격행동을 학부모께 알리지 않은 경우는 교사 25명(22.9%)이었고 그 중 상해원인이 학생이 ‘장애’ 라는 특수한 이유로 학부모께 알리지 않은 교사가 19명(17.4%),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서 알리지 않은 교사도 6명(5.5%)이었다.

### 5)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부위

실제 경험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특수교사들이 입은 상해 부위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IV-11>과 같다.

<표Ⅳ-11>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부위

n=126

상해부위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머리	두부	22	7.1%	17.5%
	악부(치아부분)	4	1.3%	3.2%
	안면부(눈,코)	25	8.1%	19.8%
목	목	10	3.2%	7.9%
가슴	흉부(가슴부분)	5	1.6%	4.0%
	복부(배부분)	7	2.3%	5.6%
허리	요부(허리부분)	29	9.4%	23.0%
	고부(엉덩이부분)	1	0.3%	0.8%
팔	견부(어깨부분)	12	3.9%	9.5%
	상완부(윗팔부분)	6	1.9%	4.8%
	엘보(팔꿈치)	14	4.5%	11.1%
	전완부(아래팔)	23	7.4%	18.3%
	손목	48	15.5%	38.1%
	손가락	48	15.5%	38.1%
다리	대퇴부(허벅지부분)	8	2.6%	6.3%
	슬부(무릎부분)	12	3.9%	9.5%
	하퇴부(장단지부분)	8	2.6%	6.3%
발	족관절부(발목부분)	16	5.2%	12.7%
	족부(발가락)	11	3.6%	8.7%
합계		309*	100.0%	245.2%

\*복수응답한 결과임.

<표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가장 많이 입는 상해 부위는 팔의 손목과 손가락이 동일하게 빈도 48명(반응백분율 15.5%)이며, 그 다음은 허리의 요부가 빈도 29명(반응백분율 9.4%)이고, 머리의 안면부가 빈도 25명(반응백분율 8.1%), 팔의 전완부가 빈도 23명(반응백분율 7.4%), 머리의 두부가 22명(반응백분율 7.1%)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입는 상해부위는 팔이 빈도 151명(반응백분율 48.7%)으로 다른 상해부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외에 머리가 빈도 51명(반응백분율 16.5%), 허리가 빈도 30명(반응백분율 9.7%), 다리가 빈도 28명(반응백분율 9.7%)이었다.

을 9.1%), 발이 빈도 27명(반응백분율 8.8%), 가슴이 빈도 12명(반응백분율 3.9%), 목이 빈도 10명(반응백분율 3.2%)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해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남자교사의 전체 응답자 61명 중 49.2%에 해당하는 30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해부위는 손목, 요부, 손가락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여자교사는 전체 응답자 178명 중 53.9%에 해당하는 96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해부위는 손가락, 손목, 안면부, 요부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즉, 남·여교사 모두 팔부본인 손목과 손가락이 다른 부위에 비해 상해를 많이 입었다.

장애영역에 따른 상해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정신지체의 전체 응답자 130명 중 61.5%에 해당하는 80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목, 손가락, 전완부 순으로 팔에 상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는 전체 응답자 54명 중 51.9%에 해당하는 28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허리의 요부, 손목, 손가락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시각장애는 전체 응답자 27명 중 25.9%에 해당하는 7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해부위는 손가락, 머리의 두부, 허리의 요부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청각장애는 전체 응답자 28명 중 39.3%에 해당하는 11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해부위는 손목, 손가락, 머리의 안면부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영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팔 부위에 상해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담당하는 학교급에 따른 상해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초등학교의 전체 응답자 87명 중 47.1%에 해당하는 41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가락, 손목, 발의 발목부분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중고등학교는 전체 응답자 152명 중 55.9%에 해당하는 85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목, 손가락, 전완부의 순으로 상해의 빈도가 높았다. 담당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팔에 상해 빈도가 높았다.

교육경력에 따른 상해부위에 대한 응답 결과는 1~2년 교육경력의 전체 응답자 51명 중 47.1%에 해당하는 24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목, 손가락, 머리의 안면부 순으로 상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년 교육경력의 전체 응답자 70명 중 62.9%에 해당하는 44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가락, 손목, 허리의 요부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6~10년은 전체 응답자 63명 중 50.8%에 해당하는 32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상해부위는 손가락,

손목, 전완부의 아래팔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10년 이상은 전체 응답자 55명 중 47.3%에 해당하는 26명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목, 허리의 요부, 머리의 두부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영역, 담당 학교급, 교육경력별로 살펴보면 손목과 손가락 등이 상해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수학생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원이 대부분 특수교사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이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팔부위에 상해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6)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실제 경험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들이 입은 상해유형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IV-12>과 같다.

<표IV-12>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사의 상해 유형

상해유형	빈도	반응백분율	케이스백분율
골절(뼈가 부러진 상태)	7	2.3%	5.6%
탈골(뼈의 관절이 빠진 상태)	2	0.6%	1.6%
염좌(인대가 늘어나거나 뻐 상태)	53	17.2%	42.1%
타박상(피부에 멍이 든 상태)	76	24.6%	60.3%
찰과상(살갓이 찢기거나 긁힌 상태)	71	23.0%	56.3%
화상	0	0%	0%
안구손상	1	0.3%	0.8%
고막손상	0	0%	0%
척추손상	7	2.3%	5.6%
치아손상	1	0.3%	0.8%
머리카락 당김	46	14.9%	36.5%
이빨로 깨물음	42	13.6%	33.3%
기타	3	1.0%	2.4%
합계	309*	100.0%	245.2%

\*복수응답한 결과임.

<표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가장 많이 입는 상해 유형은 타박상으로 76명(반응백분율 24.6%)이며, 그 다음은 근소한 차이로 찰과상이 71명(반응백분율 23.0%)이었다. 염좌는 53명(반응백분율 17.2%), 머리카락 당김은 46명(반응백분율 14.9%), 이빨로 깨물음은 42명(반응백분율 13.6%)이다. 그 외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으로 골절, 척추손상, 탈골, 안구손상, 치아손상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교사도 나타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해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3>과 같다.

**<표IV-13> 성별에 따른 상해유형 n=126**

상해유형/성별	남 총계(전체중%)	여 총계(전체중%)	합계
골절(뼈가 부러진 상태)	3(2.4%)	4(3.2%)	7(5.6%)
탈골(뼈의 관절이 빠진 상태)	1(0.8%)	1(0.8%)	2(1.6%)
염좌(인대가 늘어났거나 뻐낸 상태)	19(15.1%)	34(27.0%)	53(42.1%)
타박상(피부에 멍이 든 상태)	15(11.9%)	61(48.4%)	76(60.3%)
찰과상(살갓이 찢기거나 긁힌 상태)	13(10.3%)	58(46.0%)	71(56.3%)
화상			
안구손상	0	1(0.8%)	1(0.8%)
고막손상			
척추손상	6(4.8%)	1(0.8%)	7(5.6%)
치아손상	1(0.8%)	0	1(0.8%)
머리카락 당김	3(2.4%)	43(34.1%)	46(36.5%)
이빨로 깨물음	4(3.2%)	38(30.2%)	42(33.3%)
기타	0	3(2.4%)	3(2.4%)
합계	30(23.8%)	96(76.2%)	126(100.0%)

<표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타박상, 찰과상, 염좌,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등의 순으로 최근 5년간 상해를 경험한 교사의 성별에

다른 상해유형의 결과이다.

교사의 성별로 보면 남교사는 염좌, 타박상, 찰과상의 순으로, 여교사는 타박상, 찰과상,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상해를 입은 부위는 성별에 따라 비슷하였으며, 특히 여교사의 경우 머리카락 당김과 이빨로 깨물음이 있는데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머리카락이 길며 학생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남교사보다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공격성행동이 남교사보다 여교사에게 더 많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교사가 근무하는 장애영역에 따라 상해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4>과 같다.

<표IV-14> 장애영역에 따른 상해유형

n=126

상해유형/장애유형	정신지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합계
골절(뼈가 부러진 상태)	4(3.2%)	2(1.6%)	0	1(0.8%)	7(5.6%)
탈골(뼈의 관절이 빠진 상태)	1(0.8%)	1(0.8%)	0	0	2(1.6%)
염좌(인대가 늘어나거나 뺨 상태)	31(24.6%)	14(11.1%)	1(0.8%)	7(5.6%)	53(42.1%)
타박상(피부에 멍이 든 상태)	52(41.3%)	15(11.9%)	2(1.6%)	7(5.6%)	76(60.3%)
찰과상(살갓이 찢기거나 긁힌 상태)	46(36.5%)	16(12.7%)	5(4.0%)	4(3.2%)	71(56.3%)
화상	0	0	0	0	0
안구손상	0	1(0.8%)	0	0	1(0.8%)
고막손상	0		0		0
척추손상	3(2.4%)	2(1.6%)	2(1.6%)	0	7(5.6%)
치아손상	0	0	1(0.8%)	0	1(0.8%)
머리카락 당김	27(21.4%)	15(11.9%)	1(0.8%)	3(2.4%)	46(36.5%)
이빨로 깨물음	25(19.8%)	13(10.3%)	2(1.6%)	2(1.6%)	42(33.3%)
기타	2(1.6%)	1(0.8%)	0	0	3(2.4%)
합계	80(63.5%)	28(22.2%)	7(5.6%)	11(8.7%)	126(100%)

<표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타박상, 찰과상, 염좌,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등의 순으로 최근 5년간 상해를 경험한 교사와 근무하는 학교의 장애영역에 따른 상해유형의 결과이다.

장애영역별로 보면 정신지체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의 순으로, 지체장애는 찰과상, 타박상과 머리카락 당김, 염좌의 순으로, 시각장애는 찰과상, 타박상과 척추손상, 이빨로 깨물음의 순으로, 청각장애는 염좌와 타박상, 찰과상, 머리카락 당김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교사가 담당하는 학교급에 따라 상해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5>과 같다.

**<표IV-15> 담당 학교급에 따른 상해유형**

상해유형/담당학교급	초등학교 총계(전체중%)	중고등학교 총계(전체중%)	합계
골절(뼈가 부러진 상태)	1(0.8%)	6(4.8%)	7(5.6%)
탈골(뼈의 관절이 빠진 상태)	1(0.8%)	1(0.8%)	2(1.6%)
염좌(인대가 늘어나거나 뻥 상태)	20(15.9%)	33(26.2%)	53(42.1%)
타박상(피부에 멍이 든 상태)	23(18.3%)	53(42.1%)	76(60.3%)
찰과상(살갓이 찢기거나 긁힌 상태)	25(19.8%)	46(36.5%)	71(56.3%)
화상			
안구손상	0	1(0.8%)	1(0.8%)
고막손상			
척추손상	3(2.4%)	4(3.2%)	7(5.6%)
치아손상	0	1(0.8%)	1(0.8%)
머리카락 당김	19(15.1%)	27(21.4%)	46(36.5%)
이빨로 깨물음	14(11.1%)	28(22.2%)	42(33.3%)
기타	1(0.8%)	2(1.6%)	3(2.4%)
합계	41(32.5%)	85(67.5%)	126(100.0%)

<표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타박상, 찰과상, 염좌,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등의 순으로 최근 5년간 상해를 경험한 교사의 담당 학교급에 따른 상해유형의 결과이다.

담당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찰과상, 타박상, 염좌의 순으로, 중고등학교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머리카락 당김과 이빨로 깨물음도

일부분 차지했다. 담당 학교급에 따라 상해부위를 살펴보면 염좌, 타박상, 찰과상이 상해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상해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6>과 같다.

<표IV-16> 교육경력에 따른 상해유형

상해유형/교육경력	1~2년	3~5년	6~10년	10년이상	합계
골절(뼈가 부러진 상태)	1(0.8%)	3(2.4%)	2(1.6%)	1(0.8%)	7(5.6%)
탈골(뼈의 관절이 빠진 상태)	1(0.8%)	0	1(0.8%)	0	2(1.6%)
염좌(인대가 늘어나거나 뻣 상태)	7(5.6%)	17(13.5%)	14(11.1%)	15(11.9%)	53(42.1%)
타박상(피부에 멍이 든 상태)	18(14.3%)	26(20.6%)	19(15.1%)	13(10.3%)	76(60.3%)
찰과상(살갓이 찢기거나 긁힌 상태)	14(11.1%)	22(17.5%)	18(14.3%)	17(13.5%)	71(56.3%)
화상					
안구손상	0	1(0.8%)	0	0	1(0.8%)
고막손상					
척추손상	2(1.6%)	1(0.8%)	2(1.6%)	2(1.6%)	7(5.6%)
치아손상	0	0	1(0.8%)	0	1(0.8%)
머리카락 당김	7(5.6%)	18(14.3%)	11(8.7%)	10(7.9%)	46(36.5%)
이빨로 깨물음	7(5.6%)	13(10.3%)	13(10.3%)	9(7.1%)	42(33.3%)
기타	0	1(0.8%)	2(1.6%)	0	3(2.4%)
합계	24(19.0%)	44(34.9%)	32(25.4%)	26(20.6%)	126(100%)

<표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타박상, 찰과상, 염좌,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등의 순으로 최근 5년간 상해를 경험한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상해유형의 결과이다.

교사의 교육경력별로 보면 1~2년은 타박상, 찰과상, 염좌와 머리카락 당김, 이빨로 깨물음 순으로, 3~5년은 타박상, 찰과상, 머리카락 당김 순으로, 6~10년은 타박상, 찰과상, 염좌 순으로, 10년 이상은 찰과상, 염좌, 타박상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머리카락 당김과 이빨로 깨물음도 일부분 차지했다. 교육경력에 따라 상해부위를 살펴보면 염좌, 타박상, 찰과상이 상해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7) 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7>과 같다.

<표 IV-17>교사의 상해 치료기간

n=126

치료기간	빈도	유효%
1주일 미만	35	27.8%
1주일 이상~2주일 미만	35	27.8%
2주일 이상~1개월 미만	29	23.0%
1개월 이상	27	21.4%
합계	126	100.0%

<표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 치료기간은 1주일 미만과 1주일 이상~2주일 미만이 35명(14.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주일 이상~1개월 미만이 29명(12.1%), 1개월 이상도 27명(11.3%)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치료기간은 부상의 정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며, 상해의 심각성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교사의 상해를 성별에 따라 구별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IV-18>와 같다.

<표IV-18>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해의 치료기간

구분 (성별)	1주일미만	1주일이상 2주미만	2주일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합계
남 빈도(비율)	3(10%)	7(23.3%)	12(40%)	8(26.7%)	30(100%)
여 빈도(비율)	32(33.3%)	28(29.2%)	17(17.7%)	19(19.8%)	96(100%)
합계 (%)	35 (27.8%)	35 (27.8%)	29 (23.0%)	27 (21.4%)	126 (100%)

<표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1주일미만과 1주일이상에서 2주일미만이 각각 35명(27.8%), 2주일이상 1개월 미만이 29명(23.0%), 1개월 이상이 27명(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교사는 2주일이상~1개월미만이 12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교사는 1주일 미만이 32명(33.3%)과 1주일 이상~2개월 미만이 28명(29.2%)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자교사는 치료기간이 2주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인 상해와 여자교사는 치료기간이 1주일미만인 상해를 주로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치료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해의 부위와 상해의 유형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치료기간이 긴 상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교사의 상해 치료 상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교사의 상해 후 치료 상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19>과 같다.

<표IV-19>상해를 입은 후 교사의 치료 상태 n=126

치료상태	빈도	유효%
완치	68	54.0%
많이 호전	24	19.0%
약간 호전	3	2.4%
지금도 좋지 않음	11	8.7%
계속 아픔	1	0.8%
나왔지만 오랜기간 고생함	8	6.3%
후유증이 있음	11	8.7%
합계	126	100.0%

<표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교사의 치료 상태는 완치가 68

명(5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이 호전이 24명(19.0%)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좋지 않음이 11명(8.7%), 후유증이 있음이 11명(8.7%), 나왔지만 오랜 기간 고생함이 8명(6.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해를 입은 후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겪고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의 안전사고일 경우 보다 심각한 부상의 정도라고 보여 진다.

상해를 입은 후 교사의 치료 상태를 장애영역에 따라 구별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IV-20>와 같다.

<표IV-20>장애영역에 따른 상해의 치료상태

장애영역/치료상태	완치	많이 호전	약간 호전	지금도 좋지않음	계속 아픔	나왔지만 오랜기간 고생함	후유증 있음	합계
정신 빈도 (비율)	47 (58.8)	19 (23.8)	3 (3.8)	3 (3.8)	0	3 (3.8)	5 (6.3)	80 (100.0)
지체 빈도 (비율)	14 (50.0)	4 (14.3)	0	5 (17.9)	0	2 (7.1)	3 (10.7)	28 (100.0)
시각 빈도 (비율)	4 (57.1)	1 (14.3)	0	1 (14.3)	0	0	1 (14.3)	7 (100.0)
청각 빈도 (비율)	3 (27.3)	0	0	2 (18.2)	1 (9.1)	3 (27.3)	2 (18.2)	11 (100.0)
합계 (%)	68 (54.0%)	24 (19.0%)	3 (2.4%)	11 (8.7%)	1 (0.8%)	8 (6.3%)	11 (11.0%)	126 (100%)

<표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완치가 68명(54.0%), 많이 호전 24명(19.0%), 후유증 있음이 11명(11%) 등 순으로 현재 선생님의 부상 치료 후 회복 상태이다. 이는 장애영역별 상해유형과 함께 살펴보면 정인지체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의 순으로 비교적 치료와 회복이 빠른 상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 2.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 결과

이 연구에서 두 번째 연구문제는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행동으로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선도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교사가 겪은 상해에 대해 실제 사용한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교사상해의 처리

#### (1)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도규정의 유무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1>와 같다.

<표IV-21>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선도규정의 유무 n=126

선도규정	빈도	유효%
있다	21	16.7
없다	44	34.9
잘 모르겠다	61	48.4
합계	126	100.0%

<표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된 선도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는 61명(유효백분율 48.4%)이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44명(유효백분율 34.9%),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21명(유효백분율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역에 따라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IV-22>과 같다.

<표IV-22>장애영역에 따른 학생의 선도규정

장애영역/선도규정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합계
정신	빈도 (비율)	13 (16.3)	22 (27.5)	45 (56.2)	80 (100.0)
지체	빈도 (비율)	2 (7.1)	12 (42.9)	14 (50.0)	28 (100.0)
시각	빈도 (비율)	2 (28.6)	5 (71.4)	0	7 (100.0)
청각	빈도 (비율)	4 (36.4)	5 (45.5)	2 (18.1)	11 (100.0)
합계 (%)		21 (16.7%)	44 (34.9%)	61 (48.4%)	126 (100%)

<표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잘 모르겠다”가 61명(48.4%), “없다”가 44명(34.9%), “있다”가 21명(16.7%)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역별 빈도분석 내용은 정신지체와 지체장애 영역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45명(56.2%)과 14명(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영역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5명(71.4%)과 5명(45.5%)으로 다른 장애영역에 빈도가 높았다.

## (2)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3>과 같다.

<표IV-23>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n=126

적용한 조치	빈도	유효%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35	27.8
출석정지	3	2.4
학교 내 봉사	3	2.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	4.8
야단치거나 혼을 냄	39	31.0
상담	27	21.4
기타	13	10.3
합계	126	100.0%

<표I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로는 “야단치거나 혼을 냄”이 39명(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35명(31.0%), “상담”이 27명(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의견으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6명, “출석정지”, “학교 내 봉사”가 3명, “기타”가 13명 있었다.

적용한 조치를 성별에 따라 구별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IV-24>와 같다.

<표IV-24>교사의 성별에 따른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성별/적용조치	학부모 및 학생의사과	출석정지	학교내 봉사	전문가 상담	야단침	상담	기타	합계
남 빈도 (비율)	5 (16.7)	1 (3.3)	0	3 (10.0)	5 (16.7)	11 (36.6)	5 (16.7)	30 (100.0)
여 빈도 (비율)	30 (31.3)	2 (2.1)	3 (3.1)	3 (3.1)	34 (35.4)	16 (16.7)	8 (8.3)	96 (100.0)
합계 (%)	35 (27.8%)	3 (2.4%)	3 (2.4%)	6 (4.8%)	39 (31.1%)	27 (21.4%)	13 (10.3%)	126 (100%)

<표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야단침”이 39명(31.1%),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35명(27.8%), “상담”이 27명(21.4%) 등 순으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이다.

성별과 적용조치에서 남자교사는 “상담”이 11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야단침”, “기타”가 각각 5명(16.7%)으로 나타났다. 여자교사는 “야단침”이 34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30명(31.3%)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교사는 “상담”을 많이 하고, 여자교사는 “야단침”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자교사가 더 교육적이다 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특수학생들이 남자교사와 여자교사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교사의 성별에 따른 상해경험의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 남자교사의 전체 응답자 61명 중 49.2%에 해당하는 30명이, 여자교사는 전체 응답자 178명 중 53.9%에 해당하는 96명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상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수학생의 교사의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와 남자교사에 비해 여자교사들이 상해경험이 많게 조사되어 여자교사가 적극적인 방어로써 “야단침”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한 조치를 장애영역에 따라 구별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IV-25>와 같다.

**<표IV-25>장애영역에 따른 공격행동을 보인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

장애영역/적용조치	학부모및 학생의사과	출석 정지	학교내 봉사	전문가 상담	야단침	상담	기타	합계
정신 빈도 (비율)	20 (25.0)	3 (3.8)	0	4 (5.0)	27 (33.8)	20 (25.0)	6 (7.5)	80 (100.0)
지체 빈도 (비율)	11 (39.3)	0	0	1 (3.6)	4 (14.3)	6 (21.4)	6 (21.4)	28 (100.0)
시각 빈도 (비율)	2 (28.6)	0	0	1 (14.3)	3 (42.9)	1 (14.3)	0	7 (100.0)
청각 빈도 (비율)	2 (18.2)	0	3 (27.3)	0	5 (45.5)	0	1 (9.1)	11 (100.0)
합계 (%)	35 (27.8%)	3 (2.4%)	3 (2.4%)	6 (4.8%)	39 (31.1%)	27 (21.4%)	13 (10.3%)	126 (100%)

<표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야단침”이 39명(31.1%),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35명(27.8%), “상담”이 27명(21.4%) 순으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이다. 장애영역과

적용조치의 경우 정신지체 영역에서 80명중에 “야단침”이 27명(33.8%),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와 “상담”이 20명(25.0%) 순으로, 지체장애 영역에서 28명중에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11명(39.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서는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3) 교사가 겪은 상해에 대한 사고처리 방법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6>과 같다.

<표IV-26>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방법

n=126

	빈도	유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	1	0.4
맞춤형복지제도(교직원 복지포인트)로 가입된 학교보험	9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3	1.3
자신의 개인보험	28	11.7
건강의료보험과 자신의 사비	66	27.6
가해자(학부모 및 교사, 학교)의 금전적 보상	0	0.0
기타	19	7.9
합계	126	100.0%

<표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의 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는 “건강의료보험과 자신의 사비”가 66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개인보험”이 28명(11.7%)이었으며, “기타”는 19명(7.9%)으로 내용은 보건실 치료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원 재해라고 심사·결정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현장에서 “맞춤형복지

제도(교직원 복지포인트)로 가입된 학교보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으로 교사의 상해를 처리한 경우는 아주 낮게 나왔다.

### 3.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예방 결과

이 연구에서 세 번째 연구문제는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내용 및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과 안전교육의 필요성, 실시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실시하고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1)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예방 결과

##### (1)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7>과 같다.

<표IV-27>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 n=239

원인문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문제행동 증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연수	40	16.7	41	17.2	42	17.6
학급당 인원축소	60	25.1	29	12.2	25	10.5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24	10.0	37	15.5	25	10.5
장애전담 상담교사와 같은 인력배치	8	3.3	8	3.3	9	3.8

가정에서 생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	33	13.8	49	20.5	40	16.7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협력	21	8.8	34	14.2	43	18.0
학교주위환경 개선	18	7.5	11	4.6	8	3.3
실제적인 안전교육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35	14.6	30	12.6	47	19.7
합계	239	100	239	100	239	100

<표IV-27>는 특수교사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을 1 순위부터 3순위까지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특수교사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1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60명(25.1%)이 응답한 “학급당 인원축소”였다. 제2원인으로는 49명(20.5%)이 응답한 “가정에서 생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였으며 제3원인은 40명(16.7%)이 응답한 “문제행동 중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연수”이었다. 이처럼 연구대상이 응답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에 대한 순위는 전반적으로 “학급당 인원축소”와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내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와 “실제적인 안전교육 지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1~3원인을 제외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요인으로서 다른 원인문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2)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8>과 같다.

<표IV-28>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n=239

안전교육	빈도	비율
아주 필요하다	93	38.9
대체로 필요하다	116	48.5

보통이다	26	10.9
거의 필요하지 않다	3	1.3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0.4
합계	239	100.0%

<표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9명의 연구대상자 중 235명(98.3%)이 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안전교육이“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3명(38.9%)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아주 필요하다”가 93명(38.9%)이었으며, 반면에 안전교육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3명(1.3%),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명(0.4%)으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29>과 같다.

<표IV-29>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n=239

안전교육	빈도	비율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	0.8
대체로 실시한다	40	16.7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149	62.3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39	16.3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다	9	3.8
합계	239	100.0%

<표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239명의 연구대상자 중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에 응답한 응답한 교사가 42명(17.5%)이었으며, 반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교사는 197명(82.5%)이었다. 안

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에 비해 실제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를 학교급에 따라 구별했을 때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Ⅳ-30>와 같다.

**<표Ⅳ-30>담당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실시여부**

학교급/실시여부		적극적으로 실시	대체로 실시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다	합계
초등학교	빈도 (비율)	1 (1.1)	9 (10.3)	67 (77.0)	6 (6.9)	4 (4.6)	87 (100.0)
중고등학교	빈도 (비율)	1 (0.7)	31 (20.3)	82 (54.0)	33 (21.7)	5 (3.3)	152 (100.0)
합계 (%)		2 (0.8%)	40 (16.7%)	149 (62.3%)	39 (16.3%)	9 (3.8%)	239 (100%)

<표Ⅳ-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거의 실시하지 않다가 149명(62.3%), 대체로 실시가 40명(16.7%),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39명(16.3%)순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입을 수 있는 상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실시되는가에 대한 학교급별 빈도분석 내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87명 중에 73명(83.9%)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입을 수 있는 상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와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152명 중에 115명(75.7%)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입을 수 있는 상해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39명의 연구대상자 중 235명(98.3%)이 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한다.

#### (4)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31>과 같다.

**<표IV-31>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 n=239**

안전교육 담당기관	빈도	비율
각 시도 교육청 연수기관	93	38.9
공무원 연금공단(재해보상담당부서)	26	10.9
학교안전공제회	46	19.2
특수학교 자체적으로	43	18.0
교사양성기관인 대학의 교육과정	25	10.5
교사스스로	6	2.5
합계	239	100.0%

<표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은 “각 시도 교육청 연수기관”이 93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46명(19.2%), “특수학교 자체적으로”가 43명(18.0%), “공무원 연금공단(재해보상담당부서)”이 26명(10.9%), “교사양성기관인 대학의 교육과정”이 25명(10.5%), “교사 스스로”가 6명(2.5%) 순이었다.

**(5)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시점**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시점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32>과 같다.

**<표IV-32>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시점 n=239**

안전교육 실시 시점	빈도	비율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20	8.4
신규 및 신입교사 연수	33	13.8
교직원 연수	68	28.5
자격연수	1	0.4

자율연수	22	9.2
성교육처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연수	95	39.7
합계	239	100.0%

<표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시점은 “성교육처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연수”가 95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직원 연수”가 68명(28.5%), “신규 및 신입교사 연수”가 33명(13.8%), “자율연수”가 22명(9.2%),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가 20명(8.4%), “자격연수”가 1명(0.4%) 순이었다.

#### (6)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내용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면 <표IV-33>과 같다.

<표IV-33>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내용

원인분항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유효%	빈도	유효%	빈도	유효%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메뉴얼)	47	19.7	26	10.9	37	15.5
생활지도에 관한 긍정적 지원 방법	21	8.8	17	7.1	29	12.1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 방법	98	41.0	75	31.4	22	9.2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중재	35	14.6	57	23.8	31	13.0
학부모와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방법	7	2.9	20	8.4	32	13.4
동료교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처세술	1	0.4	4	1.7		
특수교사의 상해에 관한 최근동향과 시사점	3	1.3	14	5.9	17	7.1
교사의 상해와 특수교사의 효능감에 대한 심리상담	6	2.5	2	0.8	15	6.3

상해가 발생시 상해처리에 관한 제도 설명	21	8.8	24	10.0	56	23.4
합계	239	100	239	100	239	100

<표IV-33>는 특수교사가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빈도분석을 한 결과이다. 특수교사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제1의 내용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98명(41%)이 응답한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였다. 제2의 내용으로는 57명(23.8%)이 응답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중재”이였으며 제3의 내용은 47명(19.7%)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메뉴얼)”이었다. 이처럼 연구대상이 응답한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순위는 전반적으로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V. 논의

### 1.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

최근 5년간(2006~2010) 부산지역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39명 중 126명(52.7%)의 교사가 학교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시내 특수학교 교사 106명 중 45명(42.5%)이 학교안전사고로 신체적 상해 경험이 있다는 강병일, 김남진(2010)의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조사 연구와 비교할 때 상해빈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에 소재한 정신지체학교 75개교의 교사 273명 중 192명(70%)이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김소연(2007)의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연구와 같이 많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로 특수교사가 상해를 입은 학교안전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특수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원인을 우선순위로 알아본 결과 제1요인으로 “학생의 공격성 행동”과 제 2요인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을 아주 높게 지적하고 있었다. “학생의 공격성 행동”을 살펴보면 상해를 경험한 교사 126명 중에서 109명(86.5%)이 학생의 공격행동을 경험하였고 그 중 공격행동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고 있었던 교사는 97명(89.0%)이나 되었다. 전조증상 없이 “돌발적으로 공격행동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교사는 88명(80.7%)이었으며, 그때 “안전사고 예방지식으로 대처”한 교사는 42명(38.5%)인 것에 비해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55명(50.5%), “예방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이 11명(10.1%)이었다. 장애학생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이 높다 라고 볼 수 있으나 다른 측면으로는 전조증상이 있었지만 교사가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과 감정에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예방지식이 있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교사가 가지고 있는 예방지식의 습득 방법을 알아본 결과,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경험을 통한 예방지식”이 53

명(48.1%), “경력교사들이 사용하는 훈육의 모방과 조언”이 37명(34.3%)으로 학교현장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특수학교 안전사고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부위는 남교사는 손목, 요부, 손가락 순으로, 여교사는 손가락, 손목, 안면부 순으로 나왔으며 장애영역별로 정신지체는 손목, 손가락, 전완부 이며, 지체장애는 요부, 손목, 손가락 이고, 시각장애는 손가락, 두부, 요부의 순으로, 마지막 청각은 손목, 손가락, 안면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담당하는 학교급과 교직경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손목과 손가락이 상해빈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특수학생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지원이 대부분 특수교사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이루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팔부위에 상해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특수학교 안전사고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유형을 장애영역별로 보면 정신지체는 타박상이 52명(41.3%), 찰과상이 46명(36.5%), 염좌는 31명(24.6%)의 순으로, 지체장애는 찰과상이 16명(12.7%), 타박상과 머리카락 당김이 15명(11.9%), 염좌는 14명(11.1%)의 순으로, 시각장애는 찰과상이 5명(4.0%), 타박상과 척추손상, 이빨로 깨물음이 2명(1.6%)의 순으로, 청각장애는 염좌와 타박상이 7명(5.6%), 찰과상이 4명(3.2%), 머리카락 당김이 3명(2.4%)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성별, 담당하는 학교급과 교직경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타박상, 찰과상, 염좌의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여교사의 경우 머리카락 당김과 이빨로 깨물음이 있는데 남교사보다 여교사가 머리카락이 길며, 학생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남교사보다 사전 예방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공격성행동이 남교사보다 여교사에게 더 많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데 강병일, 김남진(2010)은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주된 원인은 학생의 공격성 행동(60.0%)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교사(43.3%)가 여자교사(41.3%)에 비해 신체적 상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교직 경력에 있어서도 큰 특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특수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학교와 청각장애학교 그리고 지체장애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들의 경우가 정신지체학교와 시각장애학교 교사들에 비해 신체적 상해를 경험한 적이 많다 반응의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의 신체적 상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

은 타박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찰과상(19.1%), 피부손상과 염좌(16.9%), 근육손상(10.1%)의 순이었다.

## 2.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의 처리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상해경험이 있는 126명의 교사들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태별로 특수교사의 상해처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공격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가 장애영역별로 알아본 결과, 정신지체의 경우에 야단침(27명, 33.8%)이 높았고, 지체장애의 경우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11명, 39.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이 있는 특수학교 교사 126명중에서 “건강의료보험과 자신의 사비”가 66명(2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신의 개인보험”이 28명(11.7%)이었으며, “기타”는 19명(7.9%)으로 내용은 보건실 치료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라고 심사·결정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현장에서 “맞춤형복지제도(교직원 복지포인트)로 가입된 학교보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으로 교사의 상해를 처리한 경우는 아주 낮게 나왔다. 강병일, 김남진(2010)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교사 27명(60%)의 치료비용 지출방법을 파악한 결과, 본인의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는 반응이 8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7.4%), 가해학생 부모에 의한 비용 처리(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와 학교 측에서 비용처리하는 명도 없었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교사 개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면, 학생·친권자가 교사 등의 과실을 주장·입증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신뢰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는 고영아(2009)의 주장과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사고 처리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47%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부모와의 관계”를 지적한 김소연(2007)의 연구를 고려해 볼 만하다.

### 3.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겪은 상해 예방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에서 우선순위별로 1순위를 제시하면 “학급당 인원축소”가 60명(25.4%), “문제행동 중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연수”가 40명(16.7%), “가정에서 생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33명(13.8%)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소연(2007)의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선결 요인으로 정신지체 교사는 “학급당 인원 축소”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고 나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특수학교 교사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98.3%가 “아주,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라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거의,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82.5%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는 인식도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담당기관은 “각 시도 교육청 연수기관”이라는 응답과 안전교육 실시시점은 “성교육처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연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우선순위 중 1순위를 살펴보면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 방법”이 98명(41.0%),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메뉴얼)”이 47명(19.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중재”이 35명(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수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원인을 우선순위로 알아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소연(2007)의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연구에서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교사의 심리로는 “화가 난다”, “특수교직에 회의를 느낀다”, “무력해지고 우울해진다.”, “당황스럽고 수치감을 느낀다”, “무섭고 두렵다”, “자존심이 상한다” 등의 심경이 토로되었고, 다른 의견으로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문제행동을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교사의 안전에 대한 보호권을 제기하며 안전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교사가 당한 학교안전사고의 실태가 조사되고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예방 및 보상 대책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 및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교사의 44.8%가 학교안전사고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학생의 공격성 행동에 의한 상해가 많았다. 상해를 입은 89.0% 교사가 공격성 행동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80.7%교사가 전조증상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였다. 38.5%의 교사가 안전사고 예방지식으로 대처하였고 61.5%의 교사가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예방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지식의 습득방법이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사한 경험을 통한 예방지식”이 53명(48.1%), “경력교사들이 사용하는 훈육의 모방과 조언”이 37명(34.3%)으로 대부분 학교현장에서 경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있는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사를 보호 할 수 있는 예방적 안전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해를 입은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다른 교사와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해 가정에서는 “학생이 당한 사고에는 민감하지만 자녀에 의해 교사가 입은 상해는 무관심함”이 39.4%, “가정에서 생활지도를 말씀하심”이 33.1%로 나타났다.

교사의 성별, 장애영역, 담당학교급, 교직경력에 차이 없이 상해부위는 손목과 손가락이, 상해유형으로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가 상해빈도가 높았다. 치료기간은 남자교사는 치료기간이 2주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인 상해와 여자교사는 치료기간이 1주일미만인 상해를 주로 입었으며, 상해를 경험한 교사 126명(유효백분율 100%) 중에서 완치인 68명(유효백분율 54.0%)을 제외한 나머지 48명(유효백분율 46%)은 호전, 지금도 좋지않음,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학교에서 학생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 할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 규정은 잘 모르거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는 정신지체의 경우에 상담이 높았고, 지체장애의 경우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라고 심사·결정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력구제로 자신의 사비나 개인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현장에서 “맞춤형복지제도(교직원 복지포인트)로 가입된 학교보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으로 교사의 상해를 처리한 경우는 아주 낮게 나왔다.

셋째, 특수교사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축소”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다. 특수교사가 입을 수 있는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시여부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높았으나, 그 인식도에 비해 안전교육의 실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은 각 시도 연수기관에서 담당하고, 성교육처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프로그램은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 방법,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메뉴얼),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중재를 들고 있었다.

## 2. 제언

이 연구는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중 교사가 겪은 상해의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 유형을 분석하여 원인별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원이 아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및 책임성에 관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교안전사고의 처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다는 교사의 자력구제로 상해를 처리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 방법,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메뉴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특수교육 현장의 학교안전사고는 특수교육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해당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 등을 마련해야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부산지역 특수학교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라는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연구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장시킴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될 경우,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심, 황순영 (2006). 특수교사의 교사 효능감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한국특수교육학회.
- 고영아 (2009).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 김남진, 강병일 (2010).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조사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부기 (2002).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소연 (2007).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효근 (2010). 학교안전사고 발생 및 공제급여 지급현황. 교육정책포럼. 통권 제206호.
- 이상근 (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인문계·실업계 체육교사들의 법적인 지도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희 (2005). 한국 여자배구 선수의 상해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임병훈 (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교사의 안전교육 실천도에 관한 진단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미리, 박정훈 (2007).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 최성규 (2005).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 특수교육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황순영 (2006).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황정순 (2006).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 부록1

# 최근 5년간 특수교사가 다친 상해의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정신지체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인은 아마도 학교안전사고 일 것입니다.

특수학교의 학교안전사고의 특징은 학생들의 ‘장애’ 라는 특성상 사고예방 및 대책 마련이 어렵고 또한 교원이 당한 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안전사고 문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특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인인 교사가 겪는 상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의 논문은 「특수교사들이 교직생활 중 겪게 되는 상해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교사가 겪는 상해에 관하여 주된 원인과 상해 부위, 사고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 11. 20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우현 올림(010-9395-9552)

## 기초자료

다음은 선생님과 관련된 일반적 질문으로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거나 기입해 주십시오

1. 성별 : ①남      ②여

2. 근무학교의 장애영역 : \_\_\_\_\_

3.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특수학교급은?

① 초등부      ② 중· 고등부      ③ 전공과      ④ 기타(      )

4. 2010년 11월 현재 특수교육 경력은?

- ① 1~2년      ② 3~5년      ③ 6~10년      ④ 10년 이상

본 연구에서 상해란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 탈골, 염좌, 찰과상, 타박상, 척추손상 등을 말합니다. 장소는 특수학교(출장지 포함)에서, 시간은 출근해서 퇴근까지 (방학중 프로그램 포함)입니다. 병원치료를 요했거나, 요하지 않는 모든 상해를 말하며 최근 5년간(2006년~2010년)으로 지병이나 유전으로 인한 치료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I. 교사상해의 실태

1. 선생님께서는 최근 5년간(2006~2010)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상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1~5회      ③ 5~10회      ④ 10회 이상

※상해경험이 없으신 선생님께서는 5page 10~15번 문항에 체크바랍니다.

2. 상해경험이 있다면 상해를 입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해경험의 종류와 수만큼 ( )안에 가장 많은 상해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 )-( )-( )-( )-( )-( )-( )

- ①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
- ② 학생의 공격성 행동으로 인한 상해
- ③ 동료교사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 ④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
- ⑤ 직원체육 및 교총배구대회 등 체육활동에 참여로 인한 상해
- ⑥ 시설미비 및 학교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 ⑦ 식중독 등 급식에 의한 상해
- ⑧ 불가항력적인 학교재해
- ⑨ 항의하러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와의 다툼
- ⑩ 기타(자신이 겪은 상해종류가 없다면 꼭 기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① 학생에게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에 체크하신 선생님께서만 답해 주세요**

(1) 상해를 입기 전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떤 신체적 도움을 주고 계셨습니까?  
※상해이유의 **종류와 수만큼** ( )안에 가장 많은 상해 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 )-( )-( )-( )-( )

- ① 교과지도를 위한 신체적 도움
- ② 생활지도 및 신변 처리를 위한 신체적 도움
- ③ 휠체어에 앉히는 등 학생을 움직이거나 학생이동에 대한 신체적 도움
- ④ 교사가 신체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장애특성을 가진 학생의 비의도적인(고의성이 없는)행동으로 인한 상해  
예시) 경직형 학생이 갑자기 놀라는 경우 손이 오그라들어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다리가 퍼져서 발로 교사의 얼굴을 차는 경우  
선생님의 경험도 예시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⑤ 기타(자신이 겪은 상해종류가 없다면 꼭 기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2-②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인한 상해에 체크하신 선생님께서만 답해 주세요.**  
**문항수(1)~(7)**

(1) 상해를 입기 전 선생님께서는 해당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상해를 입기 전 학생으로부터 전조증상이 나타났었습니까?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① 전조증상 있었음 ② 돌발적으로 일어남

(3) 상해를 입을 당시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 ① 안전사고의 예방지식을 바탕으로 대처하였음
- ② 안전사고의 예방지식은 있었지만 실제상황에서는 대처능력이 결여되었음
- ③ 안전사고의 예방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했음
- ④ 기타 \_\_\_\_\_

(4) 선생님께서 대처한 안전사고 예방지식의 습득방법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 학생에 대한 선도규정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8. 학생의 공격행동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적용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 ① 학부모 및 학생의 사과                      ② 학급 교체  
③ 출석정지                      ④ 학교 내 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⑥ 전학                      ⑦ 퇴학  
⑧ 야단치거나 혼을 냄                      ⑨ 상담  
⑩ 기타 (꼭 적어주세요) \_\_\_\_\_

9. 선생님께서 겪으신 상해는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까?

- 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처리  
② 맞춤형복지제도(교직원 복지포인트)로 가입 된 학교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④ 자신의 개인보험  
⑤ 건강의료보험과 자신의 사비  
⑥ 가해자(학부모 및 교사, 학교)의 금전적 보상  
⑦ 기타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꼭 적어주세요)\_\_\_\_\_

### Ⅲ. 교사상해의 예방

10. 교사의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를 찾아 우선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문제행동 중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  
② 학급당 인원 축소



- ④ 자격연수
- ⑤ 자율연수
- ⑥ 성교육처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연수

15. 교사의 상해와 관련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3가지를 찾아 우선순위별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학생을 휠체어에 옮길 때와 같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신체적 도움을 주는 요령(매뉴얼)
- ② 생활지도에 관한 긍정적 지원 방법
- ③ 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와 긍정적 중재 방법
- ④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지원과 중재
- ⑤ 학부모와 원활한 상호협력을 위한 관계형성 및 의사소통 방법
- ⑥ 동료교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처세술
- ⑦ 특수교사의 상해에 관한 최근동향과 시사점
- ⑧ 교사의 상해와 특수교사의 효능감(자신의 교수행동에 대해 갖는 신념)에 대한 심리상담
- ⑨ 상해가 발생 시 상해처리에 관한 제도 설명(예: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 ⑩ 기타(추가로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꼭 기입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학 번	2008815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김우현    한문 : 金祐鉉    영문 : woo hyun kim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44-50번지				
연락처	E-MAIL : kwh74ok@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영어 : A Research Study on Injury Experience of Special School Teacher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반대(    )

2011 년 6 월 일

저작자 : 김 우 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